

# 공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에 관한 고시

포항시 고시 제2017 - 64호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.

- 허가번호 : 17-11
- 점용위치 :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173-3번지선
- 점용목적 : 육상 양식어업 해수 인·배수
- 허가기간 : 2017. 5. 22 ~ 2021. 5. 31
- 허가면적 : 140㎡
- 허가 연월일 : 2017. 5. 16
- 피허가자 주소 : 포항시 북구 흥해읍 사방공원길 594
- 피허가자 성명 : 김영복

2017. 5. 16

포 항 시 장